

7

2019

• 통권 431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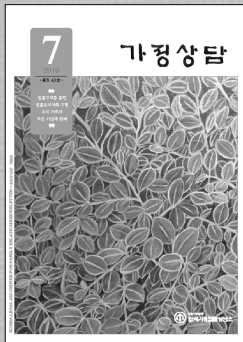
- ▲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1일 본소 강당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을 주제로 2019년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내용 6면, 관련기사 29면)



- ▲ 지난 6월 1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실무자들이 본소를 방문하여 양육비이행 법률지원 사업에 대해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29면)

- ▶ 19일에는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신용회복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1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상암동 쥐똥나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❶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❶

22 • 가정폭력상담실

25 • 인터넷 상담

26 • 결혼과 인생(197) 만화일기

어떤 삶 _ 장차현실

27 • 좋은 책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28 • 실무수습 소감문

29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2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4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한국 여성사와 사회운동의 거목, 이희호 선생님을 생각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희호 선생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사는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려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6월 초순, 김대중평화센터로부터 이희호 선생님과 상담소와의 관련된 기록을 요청받고 시간을 되짚어보다 1950년대 여성문제연구원의 간사였던 이희호 선생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상담소에 조용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생각해보니 이희호 선생님께서 일전에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이태영 선생님 그리고 상담소와의 인연을 돌아보며 '한국 전쟁이 끝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의 비참한 삶을 살피고 그 해결을 위해 1952년 여성문제연구원의 간사로 참여해 실무를 맡았고 이태영 선생님과 함께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 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문을 열 당시 이희호 선생님은 미국 유학 중이었으나 여성문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상담소와 인연을 맺어, 이후 상담소의 평생회원 그리고 건국회원으로 고비고비마다 상담소 역사의 든든한 한 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1987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던 상담소 삼십년사 출판기념회, 1992년의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출판기념회, 1999년 영부인으로서 참석하신 이태영 선생님 일주기 추모식 그리고 2005년의 상담소 회관 기공식과 2008년의 신축기념식, 2014년의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식까지 상담소와 함께 한 선생님의 여정을 돌아보니 선생님이 얼마나 상담소와 한국 가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는지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상담소 역사의 시작부터 이희호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63년의 상담소 역사 곳곳마다 선생님의 발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희호 선생님은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겸허하고 정직한 태도로 평생 바른길을 걸어 한국의 여성계와 사회운동, 정치사 곳곳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사랑하셨던 YWCA와 마지막 자리가 된 김대중 평화센터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일생은 한국 여성과 한국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떠나시고 상담소를 이끌게 되었을 때, 저는 빈 별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 곁에는 제가 항상 본받고자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몇 분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희호 선생님 역시 그 중의 한분이셨고 이러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상담소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생님 생전에 저와 언론인인 제 남편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씨를 각별히 사랑해주신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서른 두 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나 석사 학위를 받은 선구자이면서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었던 정치인 김대중과 결혼하여 신념을 함께하는 동지적 부부라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상담소가 지향하는 가정 내 부부평등과 남녀평등의 상징이었던 선생님의 동교동 자택 때문에 걸려 있던 두 개의 명패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생회원으로 상담소를 깊이 사랑하셨고 한국 여성계의 거목이셨던 이희호 선생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특 집 |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①*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개선

주제발표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장 희 숙 · 황 순 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0명 연구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내용들을 범주화하고 도출된 범주들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현상을 밝히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의 전체구조는 <폭력의 맥락>, <폭력대처 변화과정>, <경험적 지식>의 세 개 중심축으로 구성되었다.

<폭력의 맥락>에서 첫 번째로 수렴된 공통된 범주는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세부내용은 성장과정에서 내면화된 [서로 다른 기대], 현실보다는 [기대에 근거한 선택], 서로 대립된 지향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현실의 상반]이다. '폭력 전후 상황'으로 묶인 공통범주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자기만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가해자의 [자극 불허의 삶], 또 다른 쪽에서는 일생에 걸쳐 염원했던 따뜻한 가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결혼 의미 상실]의 피해자 모습이 나타난다.

<폭력대처 변화과정>의 '대처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대처불가 상황]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도움]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경찰신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충격이 갈까 두려워서, 남편에게 범죄자라는 멍에를 씌울 수 없어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초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경찰신고나 공적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 지난 6월 21일 열린 본 상담소 2019년 첫 심포지엄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대응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에서 볼 수 있으며, 심포지엄 관련 소식은 29면 참조.

하지만 가해자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폭력에 대한 허용이 참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도움수용]으로 변화한다.

‘대처과정에서 남편의 변화’는 폭력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가해자와 폭력성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변화되는 가해자로 대비되는 [두 유형의 가해자], [두 갈래의 길], [두 개의 결과]로 정리되면서 두 지류로 분화되는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대처과정에서 아내의 변화’에서는 공적체계 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지지집단에서 풀어내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조우하는 [세상을 향해 열림],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폭력 앞에서 단호해지고, 가정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수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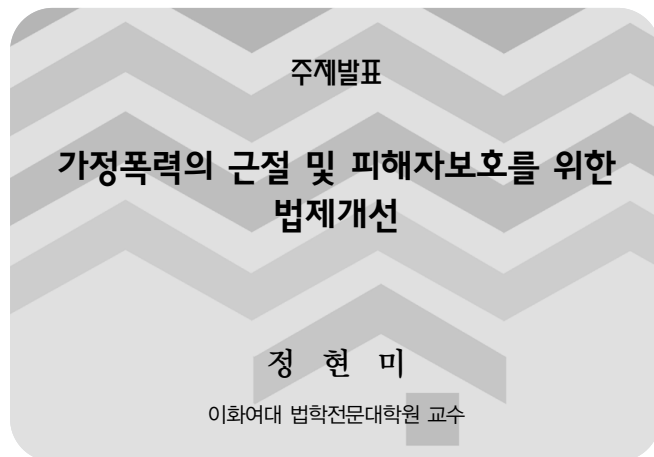
‘대처과정의 재구성’에서는 참여자가 사용했던 과거 대응방식이 더 큰 상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들이 [회피전략의 실패]로 모아졌고, 폭력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족 연속체]로 정리되었다. 부부폭력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인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은 [사적 도움의 한계]에 담겨졌다. 경찰신고와 상담소 이용 경험을 토대로 부부폭력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자각이 [공적개입의 효과]에 나타난다.

〈경험적 지식〉에서 ‘경험한 도움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경험을 통한 자각]이다.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폭력대처방법,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부 등이 공통되게 묶여졌다. [도움요인]은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적 제재,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슷한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지지집단, 사회적 출구

가 될 수 있는 일과 활동,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적 접근이다. 부부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존의 전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교육, 가족이 공동체로서 회복되기 위한 부부 공동의 노력을 포함한다. [다른 피해자를 위한 조언]에서는 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과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요청되는 도움영역’은 [법과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부 대상 프로그램 의무화, 경찰제도 개선, 자녀들을 위한 개입, 피해자 지원, 가해자를 위한 정신건강치료,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외국문헌에서 밝힌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피적 대응은 배우자의 폭력을 부추기고 참여자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아이들의 부적응문제, 일탈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경찰, 법원, 상담소 등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활용한 접근방식의 대처는 신체폭력의 추가피해를 줄이고,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관계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공공기관과 접촉하면서 여성들의 대처방식은 회피적 대응에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 대응으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자녀학대, 자녀의 문제행동, 공권력 앞에서 위축된 남편의 모습과 중단된 신체적 폭력, 사적 도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외국의 피해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한 대처전략이 폭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꾀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피해 경험을 토대로 여성들은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대처방법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동료 피해자들의 사회적지지, 자기보호, 자기돌봄, 감정조절, 일과 다양한 외부활동, 자기를 중심에 두는 독립적인 삶을 제안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대화기술과 공감기술,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I. 서론

가정폭력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동향은 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자의 민사적 보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도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처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 두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되어 다음 해부터 시행되어 20여 년 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이루어 왔다.

개정을 통하여 보완된 대표적인 법제들로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격리·퇴거 임시조치 위반시 유치장·구치소 유치(2002),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2011),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의 신설(2014)이나, 가정폭력방지법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신설(2012), 보호시설입소자에게 직업훈련비 추가(2013),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2018) 등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하여도 아직 가정폭력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양 법률,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진 기본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도의 중

복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절차의 흐름을 읽기 어려우며, 경찰, 검찰 및 법원의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절차 속에서 각 단계별 업무가 분절되기 때문에 법집행자가 피해자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의 맥을 짚어가며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다 가정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 또다시 제도개선의 문제가 제기되고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들며 왜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는가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강한 제재 위주의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2019년 6월초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 만해도 11개이다. 최근 입법안을 통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는 가해자의 체포 혹은 의무체포의 도입이다. 현재의 가정폭력법 제만 하더라도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곳곳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끌어들인다면 복잡한 법제를 더 복잡하게 얹히게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현재의 가정폭력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의무체포제도를 포함한 법제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가정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은 2013년부터 112신고시스템에 별도의 폭력코드가 신설되어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신고건수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건수가 16만 정도에서 2017년에는 27만9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거인원도 5년 동안 3배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재범률은 2013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이 통계만으로는 가정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났는지, 반대로 가정폭력은 실제 감소함에도 신고의식의 향상으로 신고가 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건수의 증가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률 감소는 공적 개입의 결과라고 추측된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2013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정서적 폭력 경험은 현저히 낮아진 경향을 보여 정서적 폭력도 폭력으로 인식하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된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²⁾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여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경향으로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의 감소 경향은 앞으로 더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일단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신고인식의 향상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 등을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급현황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의 2019. 6. 5.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2017년 207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 상담인력도 총 232명이 증원되어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을 확대하였다.³⁾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피해자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원의 종류 중에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2017년 기준으로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사·법적 지원도 12%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피해자의 안전

가정폭력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신고의식이 향상되고 있고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는 고무적이나, 구체적인 피해자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현실에서는 공적 개입을 통한 지원과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그 단적인 예이다. 그 경우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어쩌다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안전보호망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우리 가정폭력 관련 법제에서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아직도 신고 초기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소홀하여 공적 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4.4%)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37.3%)이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적 개입을 잘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⁴⁾

반면 경찰은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일반사건

1)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6-41, 72-74면, 172면.

2) http://lawhome.or.kr/webbook/gapok_counselsta2018/index.html#page=1 2018년 상담위탁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에 대한 조사

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89 2019년 6월 5일 보도자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방문 최종배포본

4)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보다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가정폭력 대응에서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55.8%),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은 경찰이 적극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불충분한 편이다’(34.4%)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⁵⁾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우는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거의 매년 두 가지 관련 법률들을 손질하여 왔음에도 제도적 미비점은 아직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III.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별법의 법제 개선방안

1.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현장출입·조사의 한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 현장이나 사건 조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 없고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방지법 제9조의 4 제2항, 제3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출입을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이 몸으로 밀치고 나아가는 방법으로 “반의사출입”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경찰은 문을 부수고 출입하는 것까지 이 규정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명 등 구체적 위협의 사실적 근거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긴급출입(강제출입)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경찰은 영장 없이 강제출입을 하는 경우 영장주의 위반의 소지로 감행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한계선상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방치될 여지가 있다.

2.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응급조치

가. 피해자보호에 반하는 피해자 분리의 문제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 내용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이다. 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라고만 규정하여 격리당해야 할 대상을 가해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해자가 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주저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분리시키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때린 자는 집에 거하고 맞은 자로 하여금 도피케 하는 것은 경찰마저 폭군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군림하게 해주는 형색이 된다. 이러한 응급조치방식은 피해자 보호에 반한다.

나. 가해자의 격리를 현행법체포 또는 긴급체포로써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가해자의 강제격리가 어려운 현행 응급조치의 결함을 현행법 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하여 가해자를 폭행현장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의원입법안으로도 응급조치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도입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다.⁶⁾

현행법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활용한다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병을 최대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언제나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현행법 체포도 어려운 점이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설혹 체포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단계에서 사법처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체포는 형사절차상 수사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상 강

5)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면.

6) 2019.3.15.(의안번호 19235)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9.3.6.(의안번호 1898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12.31.(의안번호 17928)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12.12.(의안번호 17522)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등.

제치분이지 단순히 재범방지를 막기 위한 범죄예방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응급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가 필요하다면 사법처분보다는 경찰행정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정폭력특별법의 취지에 상응할 것이며, 경찰행정작용으로 가해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제로 개선해야 한다.

다. 의무체포제도 도입문제

현행법제에서는 경찰이 초기대응을 강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응급조치 유형으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 하자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⁷⁾

가해자는 체포된다는 공포로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범죄와 달리 비단 가정폭력에만 체포를 강제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 긴급성 없이 영장 없는 체포를 요구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 등의 위헌성이 문제 된다. 영미의 입법례를 들어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비판적 지적도 많아 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경찰권이 매우 약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개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인다.

라. 개선안

지금처럼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피해자만 분리한다면 그러한 공적 개입은 적절하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정폭력의 대응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해자가 축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체포제도를 응급조치로 도입하자는 방안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응급조치로는 현재의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삭제하고, 가해자가 주거를 떠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체류금지 및 접근금지’의 내용이 포함된 처분을 명시해야 한다.

3.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긴급조치

가.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 규정방식의 문제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①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취하는 것이다(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긴급임시조치를 한 후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여 사법처분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와 마찬가지로 긴급임시조치가 경찰에 의한 구체적 위험방지 임무수행이라는 실질을 고려한다면 사후에 검사를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나. 개선안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목전에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발하는 경찰하명의 한 유형으로서 경찰고유의 사무로 볼 수 있기에 초동조치 단계에서 검사 경유를 배제하고 바로 판사 결정 단계에서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4.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검사의 가정폭력 대응조치

가. 검사의 임시조치 신청 배제

긴급임시조치에서 검사의 경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시조치 신청도 피해자보호 위주의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검사의 개입은 절차를 사법처분의 형식으로 만들어 폭력으로부터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가정폭력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 대응 법제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

7) 2018.4.23.(의안번호 2013186)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위험방지 작용에 관할권이 없는 검사가 사법처분의 형식으로 관여하여 법적 난맥상을 가중시키는데 있다. 임시조치, 혹은 긴급임시조치 모두 경찰의 권한으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개입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내리는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보더라도 검찰이 중간에 개입하여 청구해주는 나라는 없다. 예방적 경찰활동의 영역으로 경찰과 법원이 직접 통로가 되어 해결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검찰의 권한 배제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경찰과 법원의 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경찰이 반드시 관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나. 검사선의주를 삭제하고 경찰과 법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검사선의주의를 취함으로써 기소하든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든,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이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일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처럼 검사로 하여금 중심적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면서 형사사건으로 적합한 경우만 검찰로 보내는 방식이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이다. 가정폭력의 처리는 검찰 위주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다. 국제적인 경향도 법원 중심의 민사적 보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호사건으로 다루면서 피해자보호 위주의 민사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확보에 관한 권리를 강화

하고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7월 25일 15차 개정안에 의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한 접촉 금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가해자의 2차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내용이 비슷한 형식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권을 동시에 규율하여 양자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두 제도는 각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가 이중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쉽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몇 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의 폭력, 협박 등 각종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상대로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양육비지급, 주거인도, 기타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의 내용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강력히 담보되고 위반시에도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가능할 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I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 (요약)

1.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

부부, 가족, 파트너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더 이상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 사회적 공간에 놓여

있는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힘을 합해야 하며,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Wer schlaegt, muss gehen)”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2.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행정조치로서의 경찰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피해자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개입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격리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의 확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엄격히 이행되도록 법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체포 등 체포제도의 도입은 현장에서 경찰의 명령권이 확보된다면 불필요하다.

체포는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서만 예외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하여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인 가정폭력사안이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의무체포제도를 응급조치로 도입하자는 방안도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만큼 가해자를 격리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체자유까지 박탈하고 48시간까지 구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행정작용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체류금지 및 접근금지’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권한을 부여한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킨다면 굳이 강제수사 방법인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4. 경찰과 법원 간의 직접적인 위기개입 채널을 마련하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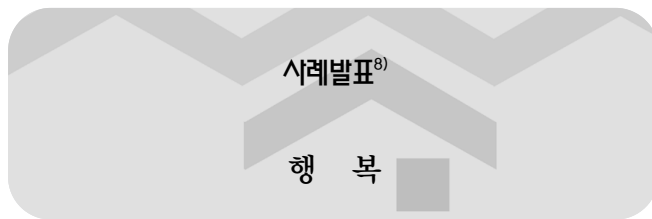
우리 가정폭력 관련법제는 법률의 이원화에서 시작하여 처벌과 예방,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등의 이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통합되지 않은 채 적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 우리의 가정폭력 대응은 주로 형사법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대처에는 잘 맞지 않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복잡한 구조에서 반복될 수 있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로 다루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정폭력처리를 위한 특례라는 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우리 법제는 어이 없이 형사처분적 속성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는 우를 범하여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행정조치로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의 강화가 필요하고 검사의 지휘는 여기서 불필요하다. 사법처분의 성격이 아니므로 검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경찰과 법원 간의 직접적인 위기개입 형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처리절차는 일반형사절차와 달라야 하므로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경찰의 초기대응에서부터 민사적 분쟁까지 한 재판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가정폭력 대응방안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혹은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전자감독은 어쩌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선례가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25살 되던 때, 제가 살던 동네로 남편이 일하러 오면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나 남편이 서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소중한 두 아이도 얻었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술집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저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수차례 신고하여 파출소와 경찰서도 여러 번 가게 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린다거나 피부에 하얀 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 경, 경찰에 가정폭력신고를 한 사건으로 가정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남편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기에 제가 이혼을 원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제게 ‘엄마가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는 죄가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남편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느끼는 바가 많이 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재결합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셨

으며 집에 오면 물건을 파손하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2017년에 남편의 음주와 외도문제로 다투다가 가정폭력으로 상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특히 아내 자조모임에는 지금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제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자니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과정, 마음 속 깊이 담아 둔 이야기를 하니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폭력으로 인한 서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젊은 아내들의 사연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상담을 받고 이제는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애뜻한 정이나 사랑의 마음보다는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더 큼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의 불성실과 폭력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에 두 번 상담소의 자조모임에 참석하고, 주민센터의 문화교실에도 참여하면서 즐겁고 활력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나름의 삶의 이유를 찾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제게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각자 부부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당사자들에게 달려있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받는 과정들이 도움이 되고 튼실한 가정과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8) 닉네임 ‘행복’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직접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고, ‘A’는 원고만 기고하였다.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그저 참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는 엄하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금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는 매일 장사를 하며 육남매를 키우셨습니다. 3남 3녀 중 넷째인 저는 대도시로 일하러 가거나 시집간 언니들을 따라갔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더부살이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1남1녀를 두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성실히 일했고, 밝고, 무엇보다 자상했습니다. 저도 힘들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을 결심했고, 월세 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자상하고 좋은 남편과 재혼하고 6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힘든 노동일을 하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조리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럴까 이해하며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재혼 후 6년이 지나면서 막말은 도를 지나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은 망치로 살림을 때려 부수고, 말리는 저를 때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은 점차 심해졌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면 따라와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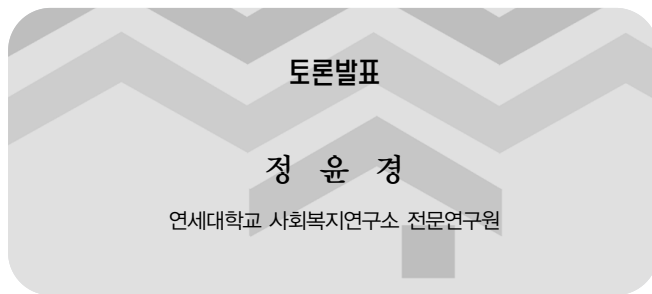
고 들어오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이웃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나, 언니 오빠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시가식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여름 어느 날, 집밖 편의점에서 남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담소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화할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은 점차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들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이 집에서 런닝셔츠를 입고 지내기, 냉장고 검사하면서 비난하지 않기, 욕설과 폭언 등 막말을 하지 않기 등을 원했는데, 실제로 남편은 결혼해서 처음으로 런닝셔츠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도 부드럽게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언행을 사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 늘 등을 보이고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 머리로 만져주고 애정표현도 해줍니다. 달라진 제 모습에 남편도 편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잘 살아보자는 등 좋은 말도 해줍니다.

상담소에서 개별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결혼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지 말고 꼭 신고하여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 없는 세상이 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실제적인 욕구 및 행위자 상담의 효과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접근성을 검토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적 도움에서의 피해자 욕구에 맞춘 개입과 행위자 변화 요인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 필요

1) 피해자의 욕구 파악과 적극적인 피해자 상담

피해자들이 공적 지원을 받은 후에 도움이 된다고 한 요인들과 일반인의 가정폭력 감소 정책 의견과 비교해보면,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반 응답자들은 폭력 문화 개선, 지원서비스 홍보, 가해자 가중처벌, 예방교육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제 피해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음⁹⁾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당장의 욕구는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 예방이 아닌 배우자의 폭력 중단과 재폭력 방지이며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가 개선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경험과 욕구에 기반 하여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피해자 심층 연구는 매우 가치가 있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도움을 실제 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처분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라는 인식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피해자 상담에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부부상담.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상담의 허, 불허를 논하기보다 국내외 여러 제언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문화에 맞게 구체적인 부부상담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부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행위자 보호처분의 효과성과 변화 요인 연구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는 정부의 예산이 쓰이므로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법 개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효과성 평가 결과들이 상담소 외부의 신뢰를 얻고 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조사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평가항목, 도구, 방법 등이 일관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고 평가 시기도 통제하여 장기적 효과까지 검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함.

2. 피해자의 공적 도움 접근성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가정폭력 신고시 사례관리 시스템의 작동을 제안.

1) 경찰의 초기대응 공권력 강화

가정폭력실태조사(2016)¹⁰⁾에 따르면 일반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1%가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부부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7%, 그 밖에 가정폭력 기관은 1.2%로 일반인들이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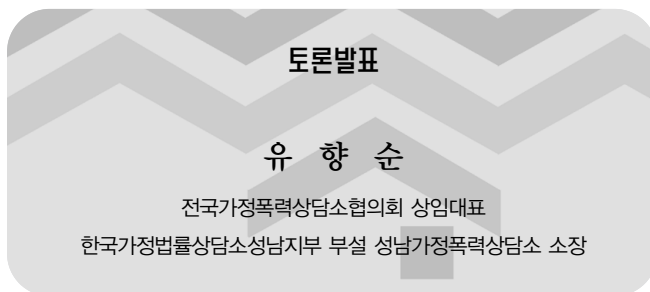
9) 여성가족부. 201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요약 6쪽)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이 24.9%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 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 12.2% 순으로 나타남.

과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처와는 간극이 매우 크며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하면 피해자는 더 심한 재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므로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한 공권력 강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법 개정에 반영되기를 바람.

2) 가정폭력 피해 신고와 함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사례관리 시스템 작동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도움요청이 무산된 경우 재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체제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

대안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폭력상담소나 사회복지시스템에 사례관리의 형태로 등록되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면담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즉 한 번의 경찰 신고에도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 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진정한 피해자지원이 무엇일까요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가정폭력상담의 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서 가장 치중하는 부분이 ‘관계패턴의 변화’ 즉, ‘대처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수행해 온 피해자지

원업무가 적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과 관련 피해자 안전과 자립 등을 위한 국가적인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봄.

: 경찰의 초기대응 시, ‘경찰에게 명령권을 수행하게 하는 권한 부여’ 등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짐.



1. 들어가며 2.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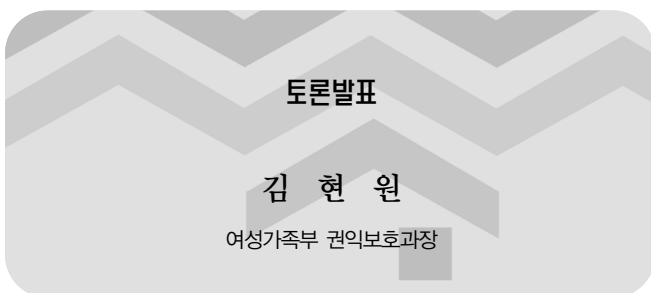
부부 사이의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고, 폭력대처 변화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상담소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음.

실무상 부부폭력 사건에서 이 폭력이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같은 범죄로 확산되고, 다시 학대받은 아동들의 경우 일부가 소년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처럼 부부 사이의 폭력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지.

3.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10)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151쪽, 103쪽.

현재 실무상 가정폭력사건이 다른 범죄사건과 같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임과 동시에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고, 검사는 수사권자로서 가정폭력범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둘을 분리하여 보호처분의 경우는 검사의 관여 없이 경찰이 행정작용으로서 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형사처벌은 보호처분과 별개로 검사의 관여 아래 형사재판을 통해 내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 체계와 달리 폭력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음. 보호처분을 형벌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에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 선택 여부를 검사에게 부여한 현행법 체계와 달리 경찰에게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검찰의 관여 없이 직접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이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권을 주는 방안은 그 나름대로 많은 장점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자인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 수립하였다.

가정폭력방지대책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영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하도록 했고,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했다.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에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이외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기로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입건 및 사건처리로 현장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개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신고이력은 112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 관리하여 향후 상습성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종결을 최소화하고, 가정폭

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폭력 범죄 종류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처분 대상자를 상대로만 가능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제도를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배제하는 지침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신설하기로 했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금명간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초등대응-수사-사후관리 단계별로 가정폭력 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3개 시·도, 서울, 대전, 전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강화 연구용역, 가정폭력예방 콘텐츠(1종) 개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 등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현재 26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

류 중에 있다. 정부의 가정폭력방지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8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이것은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가해자 처벌 및 성행교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사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반증한다.

지난해 가정폭력방지대책에서 제시한 개선과제 중에는, 정현미 교수님께서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발제에서 논의하신 것처럼,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체포’를 추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관이 가해자를 사건현장 및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또는 해석도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희숙 교수님, 황순찬 교수님께서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발제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부부폭력 피해자 10명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한 방식과 대처방식의 변화과정, 이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에 관한 질적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모색과 관련사업 추진, 그리고 가해자 성행교정, 처벌 등 방지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상담, 보호 및 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자,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 효과성 등 가정폭력예방 및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중단기적인 시계열하에서 민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평생교육 사업의 시작 (1)

1977년 12월	이동 순회상담 시작
1978년 3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어머니 학교' 개설
4월	지속적인 출판, 홍보, 조사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 등록 (등록번호 13-13)

이동 순회상담 시작

1961년 12월 인권옹호주년을 맞아 당시 보건사회부의 협조 아래 전매청 의주로 공장에서 첫 출장상담을 실시한 이래 1977년부터는 도시의 소외된 변두리 지역이나 달동네를 찾는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가정문제 해결에는 면접상담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상담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에는 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직접 찾아오기에 어려움이 많



은 사람들이 있다. 상담소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왔

다. 오늘 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장상담과 인터넷 상담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어머니학교

상담소는 월례목요법률강좌 및 무료결혼식과 함께, 가정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머니학교' 개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977년 당시 창설 22년째를 맞은 상담소가 내담자들의 가정환경을 1956, 66, 77년 등 10년 단위로 통계를 작성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선 내담자 중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1956년 10%, 1966년 12%, 1977년 8.4%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중 상담소에 이혼을 호소한 여성들 중에 이혼사유로 시부모의 학대를 받았다는 내담자의 비율이 1956년 33%, 1966년 46%, 1977년 21%로 나타나 고부갈등이 가정불화의 큰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철저한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에서 오랜 기간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가정불화의 요인이 되었던 고부문제가 현대에 와서도 해소 되기는커녕 더욱 양성화하여 드러나게 됨으로써 상담소는 개소 이래 내담자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 문제와 씨름해 왔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전환해감에 따라 진전되어온 핵가족화와 해방 이후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천, 민주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 등으로 해서 고부가 함께 살든 함께 살지 않든지 간에 이들 간의 생활습관과 의식이 점점 더 큰 단층을 이루어 가정문제의 현저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상담소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예방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현대의 사회, 현대의 가정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파탄의 주요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했다. 이러한 구상은 상담소가 1978년도 신규사업의 하나로 시어머니학교와 며느리학교를 개설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어 1978년 3월 24일 최이순(전 연세대 가정대학장)·이남덕·이효재·이동원·김기련 교수 등과 이태영 소장이 다시 준비모임을 가진 끝에 학교 명칭을 ‘어머니학교’로 결정하고 우선 교육대상을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되 앞으로는 좀더 젊은 연령층도 교육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학기는 1학기를 3개월로 하되 첫 학기를 4~6월로, 2학기를 9~11월로 정했다. 교육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두 시간 씩으로 하되 첫 시간은 교양강의 둘째 시간은 오락, 봉사, 요가, 부업지도, 견학, 문화영화 감상 등으로 오락과 교육을 겸하며 강좌내용은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스스로 자각 하여 소외감에서 벗어나 참여의식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고민도 알 수 있도록 하며 고부관계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학비는 월 1,000원씩 매 학기당 3,000원씩 받기로 했다.

‘어머니학교’ 교장은 최이순 전 연세대 가정대학장이 맡기로 하고 1978년 4월 7일, 황신덕 이사장, 이태영 소장, 최이순 교장, 학생들에게 체육과 오락을 지도할 김기련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어머니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상담소로서는 새로운 경험이라 준비에 무척 고심했고 학생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애로가 적지 않았으나 졸업이 다가오자 좀 더 배울 수 없는지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소, 재정문제에 교육을 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학생들을 졸업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 7월 1일 제1기 어머니학교 학생 77명



이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이들은 동창회를 구성하여 친목을 갖고 함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상담소를 모교삼아 계속 유대를 갖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후 상담소는 두 차례에 걸친 자체 평가모임을 갖고 1979년 12월 4일 제4기 졸업식까지 모두 2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상담소의 이 같은 활동은 사회 각계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상담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 3월에 제5기 어머니학교를 두 학급으로 증설하고 교과과정을 쇄신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향상을 도모했다.

화요반(50대반)·금요반(60대반)이라 각각 명칭을 붙인 제5기 어머니학교는 교육기간도 종래 12주(3개월)에서 16주(4개월)로 늘리고 교과 내용도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고부, 가족, 노후문제 등에 비중을 두었다. 강사진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 17명을 위촉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고 어머니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애썼다. 1980년 3월 21일 당시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제5기 어머니학교 입학식이 열렸고 입학식 후 이윤숙 박사(노인문제연구소)의 노인문제 강연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1980년 7월 8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두 개 반 9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졸업식 후 율동 ‘빨래춤’과 촌극 ‘무지개가 뜨는 언덕’을 공연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날 공연한 촌극은 금요반 어머니 7명이 출연한 단막극으로 어머니 학생 장순희 씨가 대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으로 상속문제를 둘러싼 고부갈등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경쾌한 춤을 추고 스스로 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어머니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당시 큰 화제가 되어 기독교방송을 비롯한 각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고 TBC 텔레비전 8월 3일 장수만세 프로그램에 이들의 단막극과 ‘빨래춤’을 녹화 방영하기도 했다.

편집부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폭력이란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이해하고 짚어서 이런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 남기기도

사건번호 2017버8**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1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13. ~ 2018. 6. 25.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혼인한지 41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2남(40세, 38세)이 있다. 행위자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요원이고 피해자는 2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 발생 즈음, 부부는 식당 운영 관련 채무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상태였다. 행위자는 2017년 4월 사건 당일, 일을 마친 피해자가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가게로 찾아가 망치로 자물쇠와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또한 본 사건으로 행위자는 60일 동안 피해자 가게에 대한 접근금지 결

정을 받았다.

그런데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하였고 자녀들도 화해를 권유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재물손괴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교육동영상 시청 등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행위자가 사건 이후 절주를 실천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이행하는 등의 성격으로 피해자와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느긋하게 대응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갈등요인이었던 채무와 관련하여 집과 가게를 매도, 채무를 변제하고 형편에 맞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후 마음이 편해졌고 부부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변화된 점으로 음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억압적으로 말하던 태도가 권유형으로 변한 점을 꼽았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상담 종결시에는 7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짚어서 이런 상담을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화를 참지 못하여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상담기간 중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행위자가 화를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술을 줄이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지금은 10점으로 평가하는 등 부부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 12. ~ 2018. 7. 1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4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3녀 1남(25세, 23세, 19세, 14세)이 있다. 행위자는 평소 자녀문제 및 자신의 음주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행위자는 2017년 11월 사건당일 밤, 술에 취해 둘째 딸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 배려심 부족, 매사 부정적인 태도를 갈등요인으로 꼽으며 개선을 원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음주문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수립한 계획대로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한 결과, 피해자 및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 대화법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빨래 등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여 사건 발생 1달 전 취업을 한 피해자가 고마워하였다. 절주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

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자신을 많이 배려해주었기에 피해자에게 더 바라는 것은 없다고 하였고 이제는 자신도 피해자를 배려한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폭력에 대하여 인식 개선을 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심적 상태는 물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행위자는 상담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8~9점, 지금은 10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보고가 진실임을 확인하였고, 행위자의 절주 및 가사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의 부부관계는 마이너스점수였는데 지금은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변화된 행위자 및 부부관계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5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 25. ~ 2018. 7. 18.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9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10세, 8세)이 있다. 행위자는 자영업을 하고 피해자는 전업주부였으나 4년 전부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다. 행위자는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하던 가정경제관리를 2017년 말 무렵부터 직접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2017. 11. 사건당일, 피해자가 전날 밤에 외출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초상담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서로 말을 조심하기로 다짐한 후 약

속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아이들만 집에 둔 채 밤늦게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행위자가 오후 4시~6시 사이에 출근하고 새벽 4시에 귀가하는 사정을 배려하여 개별상담과 교육강좌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담 중기에 그동안의 생활을 점검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행위자가 생각을 바꾸고 설거지도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는 등 피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행위자가 맞이하여 숙제 등 과제를 부과하고 출근하였으며, 피해자는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일을 보러 외출하면 피해자가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지내는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부가 협력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부부가 불화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고,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고 상호간 소통이 잘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무난하며 서로 조심하고 지내면 향후 갈등없이 지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1회
부부상담 4회, 부부 교육강좌 5회, 부부집단상담 7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2. 22. ~ 2018. 8. 21.

상담경과

부부는 혼인한지 2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22세)이 있다. 부부 모두 재혼으로 남편에게는 전혼 자녀(1녀, 28세)가 있다. 두 아이 모두 유학을 가서 부부만 지내고 있다.

아내에 의하면 남편이 결혼초기에, 직장 동료와 5년 간 만난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살았다. 그런데 2017년에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낮에 데이트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갈등이 재발하였고,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하여 부부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시 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의 오해라고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남편의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편이 여러 번 외도하였고 그 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아내의 고통에 무심하다고 여긴 아내의 불평과 분노가 부부싸움을 자주 일으킨 원인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남편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분노를 잘 조절하게 되기를 바랐다.

부부는 자신 및 상대방의 성격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담기간 중 서로 노력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대화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예전처럼 서로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면서 싸우는 본질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되었다. 특히 남편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행자의 과제를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매주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 부부집단상담이 종결할 즈음에 함께 여행을 가서 남편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그 결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였다. 아내는 상담을 받으며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한 점도 보았고, 이후 자신이 모자라는 부분을 있음을 인정하고, 남편이 이런 자신을 보듬어주고 가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 더 소중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아내는 상담 후에 자신은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양육환경에 기인한 결과인 것을 알고 마음을 내려놓은 한편, 남편의 노력이 느껴져 만족도가 높아졌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4점으로, 상담 종결시에는 8~9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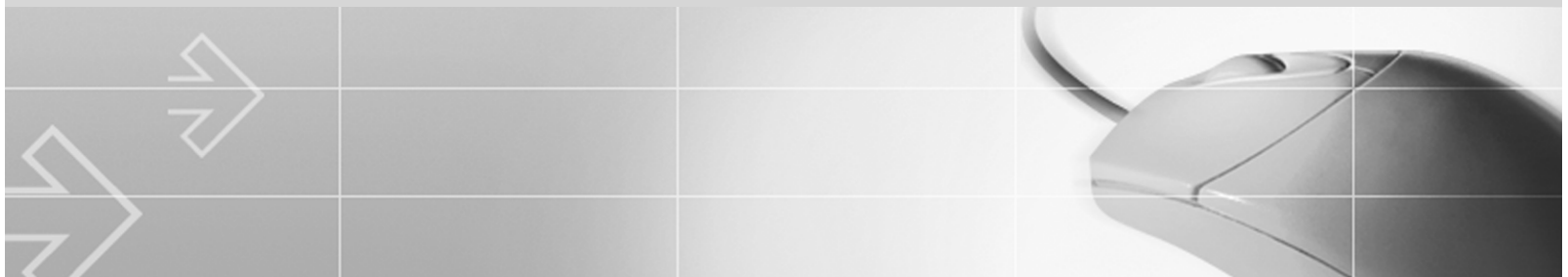
저는 배우자와 1년 전 재판으로 이혼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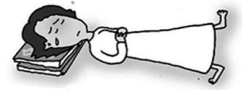
김민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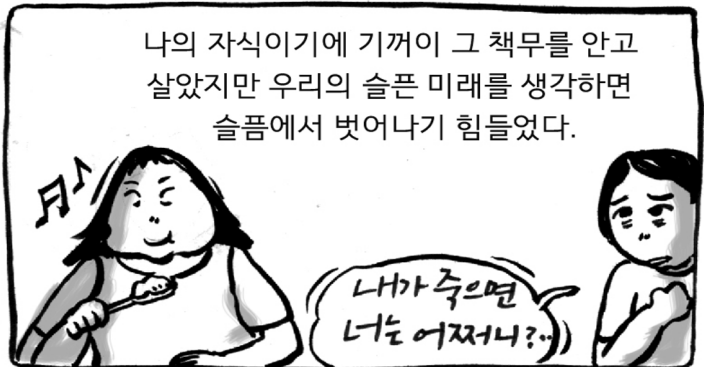
결혼과 인생(197)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8

어떤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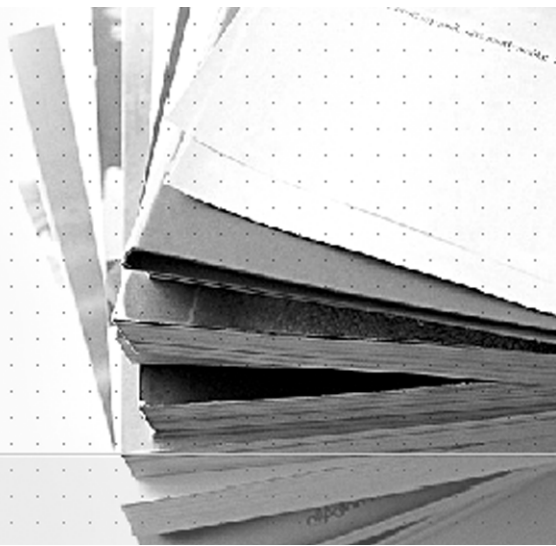
글 | 그림 | 장차현실



결국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알리려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마음이 오늘을 버텨낼 힘을 준다.

좋은 책



외국어를 아주 잘 했으면 싶은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주로 문화나 예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다. 오페라 아리아를 우리 가곡처럼 들을 수 있으면, 엘리엇의 시를 영어권의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다. 창작을 업으로 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혹은 다른 경지의 이유로 외국어를 배우는 모양이다. 내게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던, 인도인 부모를 둔 미국의 작가 줌파 라히리의 이탈리아어 여정을 다룬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를 보면 그러하다. 표지 뒷면에 실린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 김연수의 글에 의하면 “자신의 언어를 빼앗긴 작가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어떻게 작가가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 결론은 삶의 불안전성을 주인공이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그녀의 소설을 닮았다. 기발하지만 그럴듯하고, 묘하면서도 수궁이 간다.” 그랬다. 영어로 글을 써서 풀리처상을 포함 오 헨리 문학상, 펜 헤밍웨이상, 프랭크오코너 국제단편소설상 등 유수의 상을 휩쓸었고 전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평단과 독자의 신뢰와 사랑을 고루 받는 한 마디로 이미 일가를 이룬 미국의 대표 작가 줌파 라히리가 새롭게 이탈리아어와 사랑에 빠져 이탈리아로 이주를 감행하면서까지 그 말과 글을 배워 짧은 소설 두 편과 정제된 23편의 산문을 써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이다. 번역된 글을 읽어도 유려하고 세련되기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는 문체이고

내용 자체가 작가가 새 언어를 사랑하고 배워 나가는 과정이어서 묘한 일체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의 세상과 사물에 대한 배려 깊은 시선, 관조와 지혜는 여전하다고 생각되어 좋았다.

모국어와 다름없는 영어를 잠시 미뤄두고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라히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피난처에서 노숙자나 다름없이 살기 위해 훌륭한 저택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안정감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옮긴이는 이에 대해 “또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의 바다를 건너는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아름답게 정리했는데 이 또한 참으로 좋았다.

이 책을 읽고 느낌을 정리하는 동안 김혜순 시인이 캐나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그리핀시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고 시집을 영어로 번역한 최돈미 시인의 공로를 크게 인정하는 인터뷰 몇 편을 읽으면서 김혜순 시인의 그 독특한 시의 세상과 번역의 위대함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았다.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는 책의 제목은 책에 실린 두 번째 산문의 제목이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히리에 의하면 ‘이것은 부모라기보다 형제 같고, 내게 필요하고 날 이끌어주고 비밀들이 가득한 것’이다. 언어와 관련된 이것은 무엇일까?

이 숙 현 편집부장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줌파 라히리 지음
이승수 옮김

마음산책, 2015



실무수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6월 17일부터 2주간 실무수습을 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소감문을 싣는다.

이 승 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총체적으로 꼬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아침회의는 기도로 시작한다.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주간 상담소 실습을 거치면서 그 기도가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실무실습이 어땠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한다면,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던 시간’이라고 답할 것 같다. 실습기간 내내 현실과 제도에 대한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과 답답함, 도움을 주려는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느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매순간 버려 내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놀라웠던 사실은 사람들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상담을 참관한 적이 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와 고민을 이야기하는 내담자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보다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그저 하소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법적 조언을 주면 복잡하다며 화를 내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인사 한마디 없이 방을 나가기도 했다. 자신이 힘들 때는 고마워할 여유도 없는 법이다. 사람들은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다.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반응했다.

평생 가정폭력을 당하며 아이들을 키웠던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남아 아이들 미래에 피해를 줄까봐 20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년 전 주변에서 신고했을 때 경찰은 가정폭력도 가정사라며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남편은 더한 보복을 했다. 이제 아이들이 모두 자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폭행 증거도 없고 남편은 빗투성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사례가 이곳에서는 매우 일반적이었다. 때린 남편은 교육을 거부하고, 맞은 아내는 자신이 맞을 만 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법규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제공하고,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해야 하기 때문에, 때린 남편이 제대로 처벌받고, 맞은 아내는 심리 상담을 받고, 법은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 누가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상담소에서 변화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깊은 존경심이 들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님,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믿는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이웃과 약자가 아주 많이 존재하고,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감정을 버려내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임시 이사회 개최

본소의 임시이사회가 지난 6월 26일 열려 차명희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보수규정의 통과가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김춘봉, 박양덕, 차명희,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임재연 이사가 참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심포지엄(I)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을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1일 본소 강당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을 주제로 2019년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법제도 및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본소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폭력성향을 교정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따로 또 같이 진행하고 있다. 상담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왔

지만 자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최우선으로 배우자의 폭력중단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최근의 피해자들은 법제도에 의한 공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름의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등 대응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소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모색하고자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계 기관 및 주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심포지엄은 본소 곽배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본소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소개와 사례발표에 이어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을 주제로 장희숙 · 황순찬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공동연구를 장희숙 교수가 발표하였고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을 주제로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였다. 2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정윤경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유향순 상임대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민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김현원 과장(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이 참석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이행 법률지원 사업 관련 실무자 협의회 등

지난 6월 1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윤경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과 김인수 조사정보부장 등이 본소를 방문하여 양육비이행 법률지원 사업에 대해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최수진 상

담위원, 김민선·황현정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했다. 본소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 양육비이행 법률지원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6월 17일에는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본소를 방문하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추후 협조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실무수습 진행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1기 실무수습이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 과정에 수습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 과정은 접수 안내 실습, 인터넷상담 및 전화상담 실습, 법률구조 서류 검토, 본소 면접상담 및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소장 등 법률구조 서류 작성, 각 교육장좌 참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1기 실습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이승아 학생이 참여하였다. 2기 실습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6.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2019년 6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304					
법률상담 (5,820)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서신
972	4,681	146	19	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58		80		46	

2019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30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820건(92.3%), 화해조정 358건(5.7%), 소장 등 서류작성 80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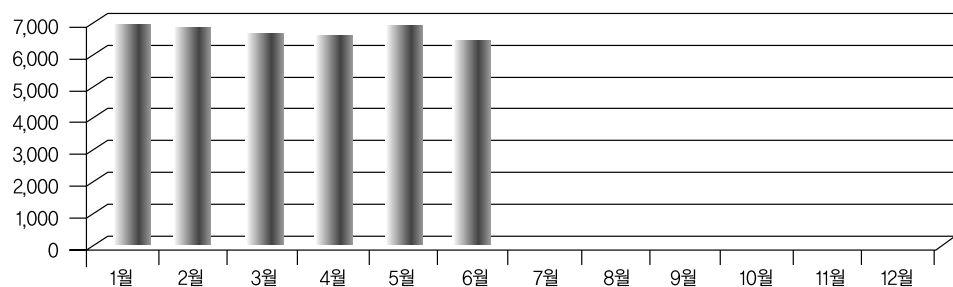
소송구조 46건(0.7%)이었다.

법률상담 5,82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4%→5.1%), 친권·양육권(5.4%→5.9%), 양육비(7.0%→9.2%), 친생부인(1.3%→1.5%), 입양(1.1%→1.5%), 파혼(0.3%→0.6%), 이혼무효·취소(0.4%→0.6%), 유언·상속(7.1%→8.0%), 가족관계등록부(4.4%→5.2%), 개명(0.6%→0.7%), 성변경(1.3%→1.4%), 파양(0.3%→0.4%), 가사절차(4.8%→5.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

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1%→0.2%), 민사기타(0.4%→0.5%), 개인회생(0.3%→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1%), 형사절차(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82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72건(16.7%), 전화상담 4,681건(80.4%), 인터넷상담 146건(2.5%), 순회상담 19건(0.3%), 지상상담 1건(0.0%), 서신상담 1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 6.12. 법률구조체험교육(3)-이레상담교육원
- 조은경 상담위원
- 6.13. 한부모가족 교육 및 상담 (3)-애란원
- 천다라 상담위원
- 6.19.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북미영 상담위원
- 6.19. 노숙인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 : 영등포 보현의 집
- 전규선 상담위원
- 6.29. 이혼관련법교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북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북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18일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수지차 기관 예산안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19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8일 MBC 백분토론에 패널로 참석하여 “이혼의 기준, 반세기의 논쟁”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28일에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 회복적 사법센터가 주최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6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12일에는 차명희 이사장과 함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설치된 이희호 선생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함께 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희,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송명호,
안서연, 오현희, 윤원섭, 이현정, 이효재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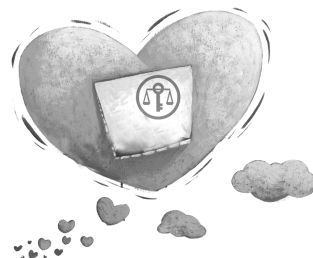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정은,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송희,
김수연, 김지우, 김채린, 김하영, 김혜원, 김효린,
나현수, 남윤중, 노규림, 문채현, 박범근, 박지원,
박채니, 배상준, 백지연, 손준호, 신유리, 엄윤서,
오정훈, 이다경, 이수정, 이승철, 이우현, 이원정,
이은현, 임희진, 정윤정, 정혜임, 조태현, 진수연,
최유진, 황인경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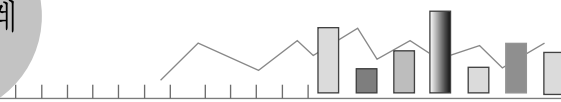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6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혼대상자 자녀 양육안내를 실시하였다.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심재범, 조영삼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과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김효정, 장경아, 황은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40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 교육(총 4회, 17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다:이름사업으로 실전! 생활법률 무료공개강좌 4건을 실시하였다. 전종필, 허노목, 이성관, 전하은, 권중환, 박태영, 박경로, 정홍욱, 곽경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5회(총 76명), 광주시법원에서 3회(총 62명)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를 실시하였다. 6월 20일

2019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강의를 판교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다. 공영서, 김민주, 이운선, 김정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6월 21일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7일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주현, 전성철, 차명심, 이운선, 황미옥, 장미애, 구민혜, 한두환, 최지희, 박진호, 최효재, 박진우, 김진영, 김정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협의이혼 상담을 매일 실시하였다.

익산지부

6월 13일, 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6월 4일, 18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 및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4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회의 참석 및 법률

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조근원, 최혜옥, 곽효영, 김성중, 김영, 강영신, 한지영, 진회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6월 5일 청구역에서 가정폭력 예방활동 및 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재경, 김창진, 정수경, 이동진, 홍지혜, 황은하, 이효재, 여지은, 김형석, 김영옥, 박수열,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6월 7일 청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019년 5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55	145	6	3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58	70	186		2
군산 (063) 442-1560	156	128	28		
대구 (053) 745-4501	1,165	1,072	93		
대전 (042) 520-5258	246	242		4	
동해 (033) 535-0188	112	112			
목포 (061) 273-2514	161	158	1		2
부천 (032) 667-2314	216	196	19		1
성남 (031) 707-6661	498	425	65	5	3
송도 (032) 834-1369	180	57	108	4	11
수원 (031) 243-4600	489	386	98		5
순천 (061) 753-9910	150	148	1		1
안동 (054) 856-4200	125	125			
울산 (052) 246-9568	167	152	5	1	9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79	276			3
인천 (032) 865-1120	354	233	106		15
전주 (063) 244-2930	280	277			3
정읍 (063) 535-3705	123	119	4		
제천 (043) 644-5690	111	108		1	2
충구 (02) 2238-6554	361	360			1
진주 (055) 746-7975	149	100	44		5
창원·마산 (055) 261-0280	301	269	30	1	1
청주 (043) 257-0088	177	143	31	3	
춘천 (033) 257-4688	403	403			
태백 (033) 554-4004	114	114			
평택·안성 (031) 611-4251	135	115	18		2
포항 (054) 283-7555	47	46			1
지부총상담	6,912	5,979	843	22	68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률구조 2018-466, 2019-70

담당 : 황현정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과 본의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내용 : 신청인(남, 43세)은 부 이**, 모 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신청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91년경 부모가 이혼하였다. 이후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부모와 연락이 끊어졌다. 2011년경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부 이**가 신청인을 상대로 이미 2002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호적이 폐쇄되고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신청인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자였다. 신청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과 모 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성본창설허가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진행하였다.

결과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2. 15.)

1. 원고(신청인)와 피고(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성본창설허가심판청구 허가(서울가정법원 2019. 5. 2.)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한양(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허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등록기준지를 “서울 **구 ***로 00”로 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 위 원고는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현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양모의 사채와 빚으로 인한 잦은 부부 싸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양부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협박 등을 당해 여관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 중3때 양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던 신청인은 외가에 찾아갔으나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양부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배척을 하여 학교도 못 다니고 친구 집을 전전하였다. 매일 먹는 것과 잠잘 곳이 걱정이었던 신청인은 공장을 다니거나 중국집 배달일 등을 하며 산 속 버려진 집에서 7년 간 살기도 하였다. 2011년 신청인은 입양기관을 통해 친어머니를 찾았으나 이미 다른 가정이 있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혜택 등을 받지 못하였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현재 오른 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상태이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8-428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4세) 겸 사건본인은 출생 직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다. 위탁모는 청구인이 아동일시보호소에 가기 전까지 40일 정도만 가정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일시보호소로 떠난 후에도 위탁모와 가족들은 청구인을 잊지 못하였다. 2015년 11월경 위탁모는 군포시장의 가정위탁보호확인을 받아 청구인을 가정위탁양육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단기간에 베이비박스, 일시가정양육, 일시보호소, 가정위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청구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얼마 전 청구인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으나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또한 위탁모의 가족들이 청구인과 일본 여행을 함께 가기 위해 청구인의 여권을 발급받아야했는데, 시청의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서 청구인의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위탁모와 가족들은 앞으로도 청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을 가족처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점점 위탁부모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계된 본 사건을 내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설미성년후견법 상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시설장의 후견인선임지정이 취소되었다.

결과 : 인용(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5.2.)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김00[000-000, 군포시 00로 00]를 선임한다.

2. 후견인은 2019. 7.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록일 : 2019. 5. 3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후견인은 2020. 5. 31.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연도까지 매년 5. 31.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일

: 매년 4. 30.)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나. 보증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금융계좌의 해지 및 금융계좌로부터 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바. 소송행위

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7-439

담당 : 백중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9월경 혼인 후 2012년 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2015년 2월경 다시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으나 사건본인이 출생하기 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2015년 5월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낳지 말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위해 상대방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임신 9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은 청구인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청구인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6년 5월경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다. 청구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받는 월 150만 원 가량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다리가 불편해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일하는 것이 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하여 월 300만 원 전후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결정된 판결에 대해 상대방은 항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결과 : 승소 (부산가정법원 2019. 5. 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61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세)은 배우자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거래처가 부도를 당하면서 어음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 부부는 기울어진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였고, 배우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반대하였지만 배우자는 듣지 않았고, 배우자의 강요로 확장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서게 되었다. 배우자는 대출자금을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무리한 진행으로 결국 부도를 맞았다. 보증채무까지 더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신청인은 소유했던 부동산을 모두 경매로 처분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미처 변제를 다하지 못한 채무들이 남아있었고, 최선을 다해 변제해보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신청인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으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신

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5. 23.)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224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4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배달 등의 일을 시작하였다. 성인이 된 신청인은 신문보급소에서 일하며 야간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운수업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험부족으로 인해 채무만 떠안고 폐업 하였다. 이후 일용근로를 전전하던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음식물분쇄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다가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2번의 사업실패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고,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출소 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으나 소득은 월 평균 60만 원에 불과해 채무까지 변제할 수는 없었다.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6.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8-419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45세)는 피고(남, 51세)와 2012년 3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교제하면서 사건본인(여, 5세)을 임신하였다. 원고는 2013년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은 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경 헤어지면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피고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6개월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직장 다니며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사건본인 외에 양육하여야 할 다른 자녀들도 있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피고는 근로 소득 외에도 주택 임대 수입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인지 청구를 통해 사건본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 4. 11.)

1. 사건본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과 본인 “□□”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용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8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59세)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8세)과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원고의 예금을 몰래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사에게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고, 자녀들의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자녀들을 곤란하게 했다.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던 2003년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와 장남은 피고로부터 당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사건본인은 백혈병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97, 98

담당 : 최강호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내용 : 신청인 겸 채권자(여, 37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45세)는 2001년 9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6세), 사건본인2(남, 14세)를 두었으나, 피신청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2005년 9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였고, 2016년 4월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1,62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2018년 7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

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이행명령 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6. 1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 느단○○○○호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2018. 7. 2.자 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심판 주문 제1항의 가항 기재 과거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인 1,540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19. 5.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88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8개월 동안 1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4. 10.)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3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7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7월 8일, 7월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7월 11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영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0월 10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침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 일 시 : 2019년 7월 20일(토) ~ 7월 22일(월)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 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 후 원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